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Looking to New U.S Tax Law for Digital Tax Solution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25 pg. 951)

미 세제 개편안을 통해 디지털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OECD의 노력

미 재무부의 고위 관료는 2017년 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로 인해 조성된 유럽과의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신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세(Digital Tax)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규 세제안으로, 다국적 IT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와 구독료,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약 3%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부서의 차관보 Lafayette G. "Chip"s Harter(이하 "Harter")는 12월 3일 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이 공동주최 한 컨퍼런스에서 재무G20의 위임을 받아 디지털세의 해결방안을 찾는 OECD의 디지털경제작업반(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이 12월 4일, 5일 EU 계획안의 대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말하였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7 December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이러한 세제안은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과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통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U 디지털세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안은 미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안들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단편적인 조치들이 아닌 전세계 국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정책임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 또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EU 디지털세가 미국의 특정 다국적 IT기업들을 목표로 하였다면, 동 세제안은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할 것입니다. 동 세제안은 지적재산권 등 특정 고부가가치 창출 무형자산을 보유한 모든 다국적기업에 적용되게됩니다.

만일 OECD의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의견의 불일치가 가속화될 것이며, 개별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개별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한세 및 BEPS

OECD 그룹은 다음의 사항들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의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Global minimum tax). 미국의 해외 관계사의 무형자산 관련 발생 소득과 관련된 규정(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과 유사한 개념이나 OECD의 세제안은 속인주의(global income basis)가 아닌 속지주의(Per-country)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 세제 개편안이 OECD의 세제안 발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며, 동 OECD 세제안은 독일과 프랑스와 공동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을 강구 미 세원 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 Abuse Tax)와 유사하며, 시장 관할권 내 회사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해외관계사에 공제대상 금액을 지불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가 이러한 공제대상 금액의 지급을 통해 높은 세율을 보유한 국가에 과세소득을 낮추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미국은 시장 관할권 내 현지 마케팅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비록 해당 마케팅 무형자산이 해외에서 창출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안을 발의하였습니다.

Back to top

India Says Global Digital Tax Proposals Fall Short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25 pg. 948)

미흡한 글로벌 디지털세 세제안

인도 정부의 한 관료는 최근 각 국가들이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세제안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각 국의 세무공무원들은 인터넷이 어떻게 경제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는 OECD의 디지털 경제환경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신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2018 년 3월 금융법(Finance Act)에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을 다루는 규정을 포함 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도 내의 기업과 거래 시 인도 내 회사가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인도 정부가 동 금융법 테두리 안에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소매회사들도 포함시켰으며, 이는 무모한 접근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경우 2020년 시행을 목적으로 올해 8월 예산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EU 회원국은 여전히 디지털세 3%의 적정성을 두고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의 소득세 담당 위원장은 2018년 12월 7일 뭄바이에서 열린 국제조세컨퍼런스(International Taxation Conference)에서 현진행되는 논의는 근시안적이며, 각 국가들은 더 깊이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 경제는 대부분의 거래가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요소들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외국계 회사들이 타 국가에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여 각 국가의 조세 부과권을 상실 시키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파편화된 이러한 조세체계는 조세조약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일관된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접근방법

영국 재무부의 Business and International Tax 수장 마이크 윌리엄스(Mike Williams)는 10 월 예산에 명시된 조세계획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전체 경제를 위한 현재의 규칙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디지털세는 전세계 광고 또는 사용자의 데이터 판매로 5억 파운드(약 6억 4천 2백만 달러)이상을 창출하는 IT기업에 2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5 억 파운드의 기준은 디지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세금부과 대상 항목을 축소시켜 전체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Facebook과 같은 SNS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음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비자(consumer)를 신규 사업 모델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고 디지털세를 지불하는 사용자(user)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체 경제활동에서 디지털 사업 관련 부분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아마존과 Flipkart 그룹이 소유한 Walmart Inc. 등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보듯이 수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와 판매자들 간 하루에만 수백 개의계약들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경제적 실재와 관련된 조항을 통해 내년 실무에 활용되기 전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계 기업과 인도 기업들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ack to top

Bulgaria: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rule, taxation of CFC profits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규정 도입

불가리아는 해당연도의 이자비용이 3백유로,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불가리아 레프 (BGN)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목적상 이자비용 손금인정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자,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 금액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할 수 있으며 이월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 중 손금산입액은 EBITDA의 30%에 순이자수익(비용)을 가감하여 계산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에 따라 과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소자본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의 유형과 비교하면 더 광범위합니다. 기존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은 일부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이자비용 제한 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소자본세제 규정하의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5년 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소자본세제 규정하에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 중 2018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변경된 과소자본세제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CFC rule) 도입

또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과 조세목적상 CFC에 대한 재무결과의 산출에 대한 내용을 도입했습니다. CFC는 발생한 소득이 불가리아 내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다음을 만족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고정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불가리아 법인세법 시행령(Corporate Income Tax Act, CITA)하의 과세실체로 특수관계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법인 이익의 50% 이상을 받기로 한 경우.

-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가 불가리아 CITA에 따라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부과되는 사업 이익에 대한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법률은 간접지분에 대한 계산 방법, 제3국에서의 CFC의 고정사업장이 불가리아 법인에 미치는 영향, 거주국가에서의 CFC자체의 조세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FC 규정 도입에 따라 관련 과세기간 동안 실현된 CFC 의 유보이익으로 인해 과세대상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보이익이 불가리아 법인의 유보이익이 과세되어 CFC 에 의해 배당된 경우 불가리아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ack to top

OECD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synthesized texts to provide clarity on the impact of the Multilateral Instruments

OECD,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통합조약문의 개발을 위한 지침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11월 14일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예방을 위한 조세조약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는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MLI"또는 "다자협약")에 의해 수정된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통합조약문(Synthesized texts)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47개(15개국)입니다.

통합조약문의 형태는 단일 문서 또는 웹페이지가 될 수 있으며, (i) 각 해당 조세협약 (Covered Tax Agreement, "CTA") 의 문구와 (ii) 당사국들이 취한 MLI 상 지위의 상호작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CTA의 MLI의 규정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해당 지침은 다자협약 당사자들에게 CTA 에 미칠 수 있는 MLI 규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관할권에 위치한 주요 목적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조세당국이 회사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혜택 배제하는 기준인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 등을 포함하여 CTA를 업데이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MLI의 효과와 각 CTA의 수정 방법을 훨씬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규정에 대한 영향

다자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위해 MLI 의 규정은 CTA 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자협약 조항이 기존 조세조약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통합조약문은 그 조항의 앞에 기존 규정에 대한 MLI 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조세조약의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기존 조항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MLI 의 새로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및 신규규정의 효력발생일 전 발생한 과세사건에 대해서는 이전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합조약문지침의 효과

MLI 의 설명문(Explanatory Statement)은 MLI 의 당사자들이 통합조약문을 개발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각 계약 관할권은 통합조약문 개발에 있어 상호 합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조약문 개발 및 상호협의를 통해 각 조세조약에 적용되는 MLI의 규정에 대해 일관적인 해석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미가 있습니다.

통합조약문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OECD 사무국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상황과 관행이 허용하는 한 일관된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MLI의 많은 당사국들이 OECD지침에 기초한 통합조약문을 개발하여 납세자들에게 더 큰 확실성 및 명료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